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백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3년 10월 일
발 의 자 : 백철현, 김영래,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

1. 의결주문

○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성주군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함과 아울러 성주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함.(안 제1조～제2조)

나.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다.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정함.(안 제4조)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함.

라.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5조)

마. 화장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협의 예산반영

다. 기타사항

- 조례안 예고 : 2013. 10. 16 ~ 10. 25(1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성주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7">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td><td>처리기간
20일 이내</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사망자와의 관 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화장장려금 지급계좌</td><td>금융 기관명</td><td></td><td>예금주</td><td></td><td>계좌 번호</td><td></td></tr>
<tr><td colspan="2">화장장 사용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5">사망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 (세)</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사망장소</td><td colspan="5"></td></tr>
<tr><td>사망연월일 및 일시</td><td colspan="2"></td><td>사망원인</td><td colspan="2"></td></tr>
<tr><td>화장일시</td><td colspan="2"></td><td>화장장소 (시설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8">※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지급일	사 망 자		신 청 자			지급내역		
	주소	성 명	주소	주민번호	성 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지급액